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 1. 30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2002. 1. 30
- 다. 상 정 일 자 : 제99회 사하구의회(임사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2. 2. 4)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여철 기획감사실장)

가. 제안이유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등의 수도분야 관리업무의 자치구이관  
에 따라 증원된 공무원 정원을 우리구 지방공무원 총정원수에 반  
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구 공무원 총정원수 644명을 645명으로 하며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630명으로 함

3. 관련법령 및 조례

- 지방자치법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

○ 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조(정원의 총수) 및 부칙 제2조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이번 조례개정은 지난해 9. 29일자 수도법 개정으로 간이상수도, 저수조, 중수도관리 업무등이 같은해 같은 날자로 부산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자치구로 업무이관이 됨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총수를 644명에서 645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써 업무처리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